

조합임원 등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공고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5조(교육의 실시)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63조(교육의 실시 및 이수)에 의거 강남구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25년 3월 5일

강 남 구 청 장

1. 법적근거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5조,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63조
2. 대 상 :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임원, 추진위원, 조합 대의원
3. 시행내용 :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 의무화
4. 교육의무이수제

1 집합교육			
대상	시기	수료기준	확인시기
조합임원	임기 내 (3년)	區 전문교육(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과정) (1회) + 區 아카데미 (연 2회 참석)	상·하반기 실적 제출
2 온라인교육			
대상	시기	수료기준	확인시기
추진위원	당선 시	市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과정 (27시간) 이수	당선 후 1년 이내 수료증 제출
조합 대의원			
조합임원			

5. 교육 관련 안내사항

- 조합임원 연임 시 교육 이수 여부 확인
- 실적 미제출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시 교육이수 여부 확인 후 처리
- 상·하반기 조합임원, 대의원, 추진위원 교육 이수 실적 정보몽땅 공개 조치
- 매년 교육 이수 실적 우수 조합(상위 1~3위) 연말 감사장 수여

6. 시행일 : 공고일 이후 즉시시행

- 시행일 이전 조합임원, 추진위, 대의원에 대한 적용기준
 - － 온라인 교육: 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이수 (추진위, 조합임원, 대의원)
 - － 집합교육 : 잔여 임기 내 이수 완료 (조합임원)
 - 아카데미 : 2025년 1회 아카데미(2025. 2. 5) 부터 이수 인정
 -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과정 : 교육 신청 기간에 교육신청서 별도 접수 받아 수강
- ※ 신청인원 초과 시, 임기 만료일이 가까운 순으로 교육 우선 배정
- ※ 교육 일정 및 신청기간 별도로 조합으로 안내 예정